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유동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133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이동통신요금 소득공제 신설(유동수의원안)	3

I. 개요

1. 유동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013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유동수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6. 5.

(3) 회 부 일 : 2024. 6.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 서비스는 국민 생활에 있어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지난 2022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스마트폰, 세대별 TV 대체 속도’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0년부터 계속 증가해 2021년 93.4%로 보편적 국민 매체가 됐음. 연령별로 스마트폰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50대 이하 국민의 99%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며 60대는 2016년 60.3%에서 2021년 91.7%, 70대 또한 2016년 17.6%에서 2021년에는 60.1%까지 급증했음.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쇼핑부터 의료서비스까지 비대면 활동이 보편화되면서 휴대전화 특히 스마트폰은 국민 생활에 필수품으로 자리잡았음.

그러나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2022년 4분기 13만4,900원, 2023년 13만200원, 2023년 2분기 12만1,900원, 2023년 3분기 12만9,900원으로 10

만원 이상 부담하고 있음.

이미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교통비에 대해서는 2013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으로 산입하여 세제혜택을 주고 있음. 현대사회의 필수품인 이동통신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해 물가상승, 가계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여함(안 제 126조의2제2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이동통신요금 소득공제 신설(유동수의원안)

가. 제도 개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함.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40%(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전통시장 사용분은 50%, 2023년 연간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80%), 도서·신문·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상영관에 대해서는 30%¹⁾(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은 40%),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30%,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하고, 2024년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는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10%의 공제율이 적용됨.

또한,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기본 공제한도를 차등하여 적용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및 도서 등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한도를 별도로 적용하며,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한도가 별도로 적용됨.

1)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 및 공제한도]

소득공제율		공제 한도		
구분	공제율	구분	7천만원이하	7천만원초과
❶ 신용카드	15%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❷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❸ 전통시장 ※ 2023년 4.1 ~ 1231. 사용분	40% (50%)	추가 공제 한도	300만원	200만원
❹ 대중교통 ※ 2023년 1.1 ~ 1231. 사용분	40% (80%)			
❺ 도서·신문·공연·미술관· 박물관·영화관람 등 ※ 2023년 4.1 ~ 1231. 사용분	30% (40%)			-
❻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 2024년 사용금액 분에 한시적으로 적용	10%		23년대비 소비증가분	10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연혁을 살펴보면, 1999년 9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도입 당시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적용기한이 10차례 연장되어 2025년말 일몰 예정임²⁾.

□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17년 1조 8,537억원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3조 9,458억원에 달하였으며, 2024년에는 4조 1,183억원, 2025년에는 4조 3,69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2) 최초 도입 시 적용기한은 2002. 11. 30.이었으나 2005. 11. 30. ⇒ 2007. 11. 30. ⇒ 2009. 12. 31. ⇒ 2011. 12. 31. ⇒ 2014. 12. 31. ⇒ 2016. 12. 31. ⇒ 2018. 12. 31. ⇒ 2019. 12. 31. ⇒ 2022. 12. 31. ⇒ 2025. 12. 31.로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왔음

[연도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망)	2025년 (전망)
조세지출액	18,537	21,176	22,553	24,698	31,882	31,675	39,458	41,183	43,693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나. 검토의견

현행		유동수의원안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126조의2) ○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항목 및 공제율:		☐ 이동통신요금 소득공제 신설 ○ 공제대상: (현행과 같음) ○ 공제항목 및 공제율:																																															
<table><tr><th>구분</th><th>공제율</th></tr><tr><td>- 신용카드</td><td>15%</td></tr><tr><td>- 현금영수증·직불카드</td><td>30%</td></tr><tr><td>- 도서·신문·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상영관 <u><신설></u> ※ 2023년 4.1 ~ 12.31. 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td><td>30% (40%)</td></tr><tr><td>- 대중교통 ※2023년 사용분</td><td>40% (80%)</td></tr><tr><td>- 전통신장 ※2023.4.~12. 사용분</td><td>40% (50%)</td></tr><tr><td>-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2024년 한시적용</td><td>10%</td></tr></table>		구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도서·신문·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상영관 <u><신설></u> ※ 2023년 4.1 ~ 12.31. 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	30% (40%)	- 대중교통 ※2023년 사용분	40% (80%)	- 전통신장 ※2023.4.~12. 사용분	40% (50%)	-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2024년 한시적용	10%	<table><tr><th>구분</th><th>공제율</th></tr><tr><td>- 신용카드</td><td>15%</td></tr><tr><td>- 현금영수증·직불카드</td><td>30%</td></tr><tr><td>- 도서·신문·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상영관 <u>- 이동통신서비스 요금</u> ※ 2023년 4.1 ~ 12.31. 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td><td>30% (40%)</td></tr><tr><td>- 대중교통 ※2023년 사용분</td><td>40% (80%)</td></tr><tr><td>- 전통신장 ※2023.4.~12. 사용분</td><td>40% (50%)</td></tr><tr><td>-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2024년 한시적용</td><td>10%</td></tr></table>		구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도서·신문·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상영관 <u>- 이동통신서비스 요금</u> ※ 2023년 4.1 ~ 12.31. 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	30% (40%)	- 대중교통 ※2023년 사용분	40% (80%)	- 전통신장 ※2023.4.~12. 사용분	40% (50%)	-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2024년 한시적용	10%																		
구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도서·신문·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상영관 <u><신설></u> ※ 2023년 4.1 ~ 12.31. 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	30% (40%)																																																
- 대중교통 ※2023년 사용분	40% (80%)																																																
- 전통신장 ※2023.4.~12. 사용분	40% (50%)																																																
-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2024년 한시적용	10%																																																
구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도서·신문·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상영관 <u>- 이동통신서비스 요금</u> ※ 2023년 4.1 ~ 12.31. 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	30% (40%)																																																
- 대중교통 ※2023년 사용분	40% (80%)																																																
- 전통신장 ※2023.4.~12. 사용분	40% (50%)																																																
-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2024년 한시적용	10%																																																
○ 공제 한도 <table><tr><th colspan="2">총급여</th><th>7천만원 이하</th><th>7천만원 초과</th></tr><tr><td colspan="2">공제 한도</td><td></td><td></td></tr><tr><td colspan="2">기본공제 한도</td><td>300</td><td>250</td></tr><tr><td rowspan="4">추가 공제 한도</td><td>전통신장</td><td rowspan="3">300</td><td>200</td></tr><tr><td>대중교통</td><td></td></tr><tr><td>도서 등</td><td>해당없음</td></tr><tr><td>24년 소비증가분</td><td colspan="2">100</td></tr></table>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 한도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신장	300	200	대중교통		도서 등	해당없음	24년 소비증가분	100		* 이동통신서비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 ○ 공제 한도 <table><tr><th colspan="2">총급여</th><th>7천만원 이하</th><th>7천만원 초과</th></tr><tr><td colspan="2">공제 한도</td><td></td><td></td></tr><tr><td colspan="2">기본공제 한도</td><td>300</td><td>250</td></tr><tr><td rowspan="4">추가 공제 한도</td><td>전통신장</td><td rowspan="3">300</td><td>200</td></tr><tr><td>대중교통</td><td></td></tr><tr><td>도서 등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은 100만원 이하)</td><td>해당없음</td></tr><tr><td>24년 소비증가분</td><td colspan="2">100</td></tr></table>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 한도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신장	300	200	대중교통		도서 등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은 100만원 이하)	해당없음	24년 소비증가분	10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 한도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신장	300	200																																														
	대중교통																																																
	도서 등		해당없음																																														
	24년 소비증가분	10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 한도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신장	300	200																																														
	대중교통																																																
	도서 등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은 100만원 이하)		해당없음																																														
	24년 소비증가분	100																																															

* 유동수의원안 2024. 6. 5. 제출(의안번호 133)

□ 개정안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이동통신서비스를 사용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연 100만원 한도)³⁾을 추가하여 현재 도서·공연·미술관 사용분에 적용되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 국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 사용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신용카드 사용분(공제율 15%)보다 높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음.

도서·공연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는 2018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는 2019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신문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되고 있고, 영화상영관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되고 있음.

□ 개정안은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하여 도서·공연·미술관 사용분에 적용되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려는 취지로 발의된 것으로 보임.

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통신서비스”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말한다.
2. “이동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 휴대폰 회선 수는 5,674만 6,792개로, 국내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는 등 일상생활에서 필수재적인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통계청이 발표한 “연간 지출 가계동향”에 따르면 2023년 1인 이상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153만 6,000원으로 전체 소비 지출(1,843만 2,000원)의 4.6%에 달함.

개정안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지출분의 3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지출에 따른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만 별도의 소득공제를 인정하게 될 경우 인터넷 이용료, 전기요금 등 유사한 일상적인 경비에 대한 소득공제 요구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정책과의 중복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개정안과 같이 소득공제 적용시 면세자⁴⁾인 저소득층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2022년 귀속소득 기준 33.6%

[취약계층 이동전화 통신요금 감면제도]

구분	장애인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		
감면대상	기본료 및 통화료 35%	월 26,000원 기본 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월 11,000원 기본 감면 및 초과 요금의 35%		월 청구요금 중 50%
감면한도	없음	월 33,500원	월 21,500원		월 11,000원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기존의 도서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제126조의 2제2항제3호에 목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에 별도의 호를 신설하는 방식이 입법취지 및 법 체계적 측면을 고려할 때 보다 적합할 것으로 보임.

현행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는 다른 공제항목과 달리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에 한정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같은 호에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소득공제를 규정함으로써 공제 대상자를 몰가 상승, 가계 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대적으로 저소득 근로자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제126조의2제2항제3호는 도서, 공연 관련 지출과 미술관, 박물관 등 관람료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호를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구성요소(안 제126조의2제2항)]

구분	공제대상	
제1호	전통시장사용분	
제2호	대중교통이용분	
제3호 (문화비)	가목	도서·신문·공연사용분
	나목	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사용분
	다목(개정안)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제4호	직불카드사용분	
제5호	신용카드사용분	
제7호	2023년 사용분의 105%를 초과하는 2024년 사용분	
제9호(수정의견)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문 의 처

02)6788-5154